

자동차는 **의무보험(책임보험)**에 반드시 가입하고 운행하여야 합니다



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다가
경찰청 무인단속기 또는 경찰 등에 의해 적발된 보유자는
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및 제51조의 규정에 따라
형사처벌 또는 **통고처분**을 받게 됩니다.

◆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자동차로 적발되는 경우(예시)

- 속도위반, 신호위반 등으로 경찰청 무인단속기에 적발
- 교통사고 발생 등으로 경찰 등에 적발

◆ 행정 및 형사처분

구 분	처 벌 규 정	비 고
의무보험 미가입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1회 적발된 보유자	- 비사업용 자동차 : 최고 50만원 범칙금 - 사업용 자동차 : 최고 200만원 범칙금	통고처분
의무보험 미가입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1년 이내 2회 이상 적발 또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보유자	-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원 이하의 벌금	형사처벌

◆ 과태료 부과금액

구 분	위 반 내 용	처 벌 기 준 (단위:원)			
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(이륜차 포함)	모든 자동차의 의무보험 미가입	구 분	자가용	사업용	이륜차
		10일 이내	15,000	65,000	9,000
		10일 초과 (1일씩 가산)	6,000	18,000	1,800
		최고 부과액	900,000	2,300,000	300,000
	※ 자동차 의무보험은 가입된 보험회사에서 만기일 이전에 안내해드립니다 (주소 변경 시 보험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)				
상속이전등록	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(상속폐차 : 3개월 이내)	- 10일 이내 지연 : 10만원 10일 초과시 1일당 1만원 가산 (최고 50만원 부과)			